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검사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검사기관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일시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시설의 개요	
	기타 주요내용	

차기 정기검사일은 ()년 ()월 ()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도, 양수, 임대, 폐쇄, 또는 사용종료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지나 그 주변지역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입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